농촌체류형 쉼터.농막 운영지침 수정 배경 및 내용

□ 배경 및 내용

○ 농촌체류형쉼터·농막 설치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할 경우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 내용 추가

○ 농막 설치 주체에 농업법인 추가

□ 비교표

당 초	변 경
제1장 농촌체류형 쉼터 **5. 설치 방법** **1 절차** [1]「건축법」제20조제3항·제4항 및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에 따라 설치('세움터' 또는 직접 방문) ※ 지방자치단체 사정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농지부서에서 농촌체류형쉼터의 요건 성립 여부를 미리 확인하게 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수리 <신설>	**제1장 농촌체류형 쉼터** **5. 설치 방법** **1 절차** [1]「건축법」제20조제3항·제4항 및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에 따라 설치('세움터' 또는 직접 방문) ※ 지방자치단체 사정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농지부서에서 농촌체류형쉼터의 요건 성립 여부를 미리 확인하게 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수리 ※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할 경우 담당 부서에 협조 필요
제2장 농막 **3. 설치 개요** **1 설치 주체** ○ "농업인"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「농지법」 제2조제2호) ※ 「농지법」제23조 각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 포함 ○ "주말·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"이란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(「농지법」 제2조제8호) <신설>	**제2장 농막** **3. 설치 개요** **1 설치 주체** ○ "농업인"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「농지법」 제2조제2호) ※ 「농지법」제23조 각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 포함 ○ "주말·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"이란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(「농지법」 제2조제8호) ○ "농업법인"이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(「농지법」 제2조제3호)

당 초	변 경
2 농막의 활용 ㅇ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“본인”이 “농자재·농기계 보관,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, 농작업 중 일시휴식”을 위해, 필지 당 한 개만 설치 가능 - (본인) 농업인 또는 주말·체험영농하려는 개인 또는 세대원* *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제6조(주민등록표의 작성),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(생략) - (설치기준) 개인(또는 세대)별 필지 당 한 개만 설치 <신설> ☞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연접 필지에 농막 추가 설치 불가	2 농막의 활용 ㅇ 농업(법)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“본인”이 “농자재·농기계 보관,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, 농작업 중 일시휴식”을 위해, 필지 당 한 개만 설치 가능 - (본인) 농업인 또는 주말·체험영농하려는 개인 또는 세대원* *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제6조(주민등록표의 작성),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(생략) - (설치기준) 개인(또는 세대, 법인)별 필지 당 한 개만 설치 ☞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연접 필지에 농막 추가 설치 불가
4. 설치 방법 **1 절차** ㅇ 「건축법」 제20조제3항·제4항 및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에 따라 설치(‘세움터’ 또는 직접 방문) <신설>	**4. 설치 방법** **1 절차** ㅇ 「건축법」 제20조제3항·제4항 및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에 따라 설치(‘세움터’ 또는 직접 방문) ※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할 경우 담당 부서에 협조 필요